

2. 主要骨子		
區 分	主 要 內 容	備 考
用語의 定義 (第 2 條)	保存會議錄, 配付會議錄, 臨時會議錄, 非公開會議錄, 參考文書 等	
本會議錄 (第 3 條)	會議規則 第46條第1項 事項 記載	
委員會會議錄 (第 4 條)	會議規則 第62條第1項 事項 記載	
臨時會議錄 (第 5 條)	會議規則 第48條에서 定한 字句의 訂正을  거쳐야  함	
保存會議錄 (第 6 條)	配付會議錄에 掲載하지  아니하기로  한  부분  을  포함한  모든  發言內容을  掲載	
非公開會議錄 (第 7 條)	非公開會議錄은  原稿로  보관하는게  원칙	
字句의 訂正 (第10條)	會議錄에  正誤表를  掲載하거나  保存會議錄에  訂正하여  掲載함.	
會議錄原稿의 閱覽·複寫 (第11條)	議長의 許可를  얻어야  함.	
錄 音 (第12條)	速記業務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錄音  가능	

  

<p>3. 檢討意見</p> <p>○國會의 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을  準用하여   자세히  關聯條項을  記述한  關係로  訂正 또는  修正의  여지는  별로  없다고  사료  되나</p> <p>○第5條의 臨時會議錄에  關한  條項의  境遇  本會議의 會議錄 關係만  規定하고  委員會의  臨時會議錄 發刊에  대해서는  言及이  없는  바  檢討가   필요하고,  會議錄은  永久  保存되어야  한다고  생각하는  데  會議錄  保存의  部署에   대한  언급이  없는  바,  이에  대한  檢討가   필요하다고  사료됨.</p> <p>-----</p> <p>以上으로 檢討報告를 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金寅東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 있었습니다.  質疑와  討論을  하실  委員이  있으  시면  質疑·討論하여  주시기  바랍니다.  없습  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 委員  있음)</p> <p>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 서울特別市議會會  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案을  原案대로  可  決하고자  하는데  異議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 委員  있음)</p>	<p>그러면 可決되었음을 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-----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</p> <p>第1條(目的) 이 規程은 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  則 (이하“會議規則”이라  한다)에   의한   서울  特別市議會會議錄 (이하“會議錄”이라  한다)  의  作成·發刊·配付·保存·閱覽·複寫등에  關하여   필요한  事項을  規定함을  目的으로  한다.</p> <p>第2條(用語의 定義) 이 規程에서  사용하는  用  語의  定義는  다음과  같다.</p> <p>1. “保存會議錄”이라  함은  會議規則  第47條  第1項  및  第62條第3項의  規定에  따라  서  명  날인하여  서울特別市議會(이하“議會”라  한다)에  영구보존하는  會議錄을  말한다.</p> <p>2. “配付會議錄”이라  함은  議長(委員會會議錄  의  경우에는  委員長.  이하  같다)이  비밀  을  요하거나  社會의  安寧질서  維持를  위  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된  부분에  關하여는   발언자  또는  運營委員會委員長과  協議하여</p>
---	---

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의 의.會議에 관한 事項을 記載·發刊하여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게 反포하는 會議錄을 말한다.

- 3. “臨時會議錄”이라 함은 會議內容의 신속한 把握과 字句의 訂正등을 위하여 임시로 發刊하는 會議錄을 말한다.
- 4. “非公開會議錄”이라 함은 본회의 (委員會會議錄의 경우에는 委員會, 이하 같다)의 議決이 있거나 會議規則 第49條第1項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會議에 관한 事項을 記載한 會議錄을 말한다.
- 5. “參考文書”라 함은 議員이 그 發言의 參考를 위하여 會議錄에 掲載하는 간단한 文書를 말한다.

第3條(本會議錄) ①本會議錄은 會議規則 第46條第1項의 事項을 記載한다.

②本會議錄 記載事項中 當일 會議錄에 掲載하기 어려운 各種 報告書·參考資料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.

③委員長은 委員會會議錄 原稿가 會議規則 第49條第1項 단서의 規定에 해당하는지의 與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議錄 발간전에 이를 檢討할 수 있다.

第5條(臨時會議錄) ①本會議(委員會를 包含하지 아니한다)의 會議錄은 미리 臨時會議錄을 發刊하여 會議規則 第48條에서 정한 字句의 訂正을 거치도록 한다.

②臨時會議錄에는 會議規則 第49條第1項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掲載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掲載하지 아니한다.

③第2項의 措置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措置에 필요한 範圍內에서 臨時會議錄의 配付를 保留하거나 이미 配付된 會議錄을 회수할 수 있다.

第6條(保存會議錄) ①保存會議錄은 會議規則 第49條第1項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配付會議錄에 掲載하지 아니하기로 한 部分을 包含한 모든 發言內容을 掲載한다.

②議長은 議員으로부터 會議規則 第49條第1項의 단서의 規定에 의한 保存會議錄의 閱覽·複寫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議會內에 한하여 허가한다.

第7條(非公開會議錄) ①非公開會議錄은 原稿로 保管한다. 다만, 保存管理에 필요한 경우 이를 인쇄하여 保管할 수 있다.

②議長은 議員으로부터 非公開會議錄의 閱覽要求가 있을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會議規則 第4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표하여서는 아니되며,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.

第8條(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) 議長은 議員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掲載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. 다만, 發言內容을 완결짓는 簡明한 것으로써 議長이 인정하는 範圍內의 것이어야 한다.

第9條(參考文書等) ①議員이 參考文書を 會議錄에 掲載하고자 할 때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그 會議內容 및 發言에 參考되는 간단한 文書이어야 한다.

②會議規則 第46條第1項第14號 및 第62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事項을 會議錄에 掲載하고자 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項이어야 한다.

第10條(字句의 訂正) ①會議錄이 配付된 後에 字句의 訂正要求가 있을때에는 다음 會議錄에 正誤表를 게재하거나 保存會議錄에 訂正하여 게재한다. 다만, 臨時會議錄의 訂正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配付會議錄에 訂正하여 게재한다.

②會議錄의 字句의 訂正要求는 다음 各號의 경우에 한하여 訂正要求를 할 수 있다.

- 1. 法條文 및 數字등을 명백히 잘못 發言한 경우
- 2. 간단한 先後文句를 變更하는 경우
- 3. 調査를 訂正하는 경우
- 4. 速記의 錯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

第11條(會議錄原稿의 閱覽·複寫) ①議員이 會

議錄 發刊前의 會議錄原稿를 閱覽 또는 複寫하고자 하는 申請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許可할 수 있다.

② 議員이 會議規則 第63條에 規定된 內容이 記載된 會議錄原稿를 閱覽하고자 할 때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을, 會議規則 第49條第1項 단서에 規定된 內容이 記載된 會議錄原稿를 閱覽·複寫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第2項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.

第12條(錄音) ① 會議錄作成을 위한 速記業務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錄音을 할 수 있다.

② 本會議 錄音을 複寫하고자 하는 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錄音複寫는 配付會議錄, 내용에 한하며 發言議員外의 자가 錄音複寫를 하고자 할 때에는 發言議員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.

第13條(委任規程) 會議錄의 作成方法 등 기타 필요한 細部事項은 事務處長이 따로 定할 수 있다.

附 則

이 規程은 발령한 날부터 施行한다.

3.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 規程案

(11時 23分)

○委員長 金寅東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

○專門委員 梁在大 다음은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

(報告)

1. 制定理由

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 證人·鑑定人 및 參考人등의 出席에 따른 費用의 支給基準을 規定하는 데 있음.

2. 主要骨子

區 分	主 要 內 容	備 考
費用의 種類 (第2條)	運賃(鐵道·船舶·航空 및 自動車) 現地交通費·宿泊料·食費 및 食卓料	
費用의 支給基準 (第3條)	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 別表1 및 別表2 準用	
費用支給日數의 計算(第4條)	出席한 날로부터 證人으로서 滞在한 日數	
費用支給의 例外 (第5條)	市議會議員·關係公務員·市傘下公社·工團의 任職員	

3. 檢討意見

○議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時 證人·鑑定人·參考人等으로 出席한 경우 旅費 및 手當을 支給하기 위해서 費用支給基準을 定해야 마땅하나, 地方自治法과

關聯條例의 根據 規定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思料됨.

○하지만, 補償費로써 豫算措置가 수반되어 있고, 案件審議 등과 關聯하여 證人等을 出席시켜 證言·鑑定 또는 陳述을 들어야 할